

「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 → 2010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10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54/compare?from=123&to=12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2:39:2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설치)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<u>종교 활동위원회</u> 를 둔다.	제1조(설치)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<u>교육이념 구현위원회</u> 를 둔다.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. 1. <u>춘계 및 추계 기도주일 계획 및 집행</u> 2. <u>기타 학기 중의 학생 신앙 행사 지도</u> 3. <u>기도주일실행협의회 구성</u> 4. <u>기타 종교 생활 전반에 관한 협의</u>	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. 1. <u>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</u> 2. <u>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</u> 3. <u>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u>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, 교목실장, 처장(4), 교목부장, 기획실장, 학생지원부장, 생활교육관장(2), 신학대 학원장, 신학과장, <u>교목실 팀장(3)</u> , <u>선임학부장(4)</u> ,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.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.	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, 교목처장, 부총장, 기획처장, <u>교무처장</u> , 학생지원 <u>처</u> 장, <u>사무처장</u> , 대외협력처장, <u>대학원장들</u> , 신학과장, <u>단과대학장</u> , 교수(5)인으로 구성한다.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, 서기는 <u>교목처장</u> 이 한다.
제4조(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.	제4조(직무)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종교 활동위원회"를 "교육이념 구현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.

1.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
2.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
3.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, 교목처장, 부총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대학원장들, 신학과장, 단과대학장, 교수(5)인으로 구성한다.

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회무를 통할하고"를 "회의를 총괄하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